## 예 산 총 칙

## 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511,749,954	15,352,499
일반회계		413,397,376	12,401,921
특별회계		98,352,578	2,950,577
-	기타특별회계	98,352,578	2,950,577
	상수도특별회계	15,373,697	461,211
	청사건립특별회계	52, 157, 373	1,564,721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883,478	26,504
	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2,021,319	60,640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666,728	20,002
	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	27,249,983	817,499

- 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없다".
- 제 4 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 및 "계속비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351,812천원으로 한다.
- 제 6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,6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  - 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  - 2. 직무수행경비
  - 3. 법정의무부담금(연금부담금, 국민건강보험금, 연금지급금, 사회복무요원보상금)
  - 4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
  - 5. 재해대책 및 복구비
- 제 8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교부세, 조정교부금,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